금융위원회	보 도 참 고 자 료			금융감독원
	보도	배포시부터 즉시	배포	2017.3.24.(금)

책 임 자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00-2680)		류성재 사무관(02-2100-2693) 차영호 사무관(02-2100-2683)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박 권 추(02-3145-7700)		홍순간 팀 장(02-3145-7725) 최 상 팀 장(02-3145-7710)

제 목 :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Ⅰ. 감리 착수배경 및 경과

□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이 '15년 반기 **대규모 손실**을 공시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서,

○ '15.12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감리**에 **착수**한 후 **'특별감리 TF'**를 구성하여 **감리**를 **진행**('15.12월~)

□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2.21~22일 **감리위원회** 및 2.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논의**

○ 특히,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부과에 앞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 3월중 **총 3차례**의 **감리위원회**(1회)·**증권선물위원회**(2회)를 **추가 개최**하여 심도 깊게 **제재안**에 대해 **논의·심의**하였음

- 특히 **검찰수사 결과**를 참고로 한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조치수준**을 **결정**하였음

2080360 / 2017-03-24 15:5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Ⅱ. 감리결과 증선위 조치 및 근거

1.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3. 24일 임시 제2차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감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일부 업무정지 건의조치**※를 하였음

> ※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개요**
>
> ►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 금지**
>
> ► **신규감사 업무 금지 대상기업**(참고1) :
>
> ❶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제외
>
> ❷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
> 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 또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동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

(2017. 2. 23일 임시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부과(1,600백만원)

** '14년 감사조서를 위조한 뒤 동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16.3월)한 사실이 있어 거짓자료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20백만원)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일부 업무정지 조치수준**은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될 예정

※ 감리결과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붙임 참조**

2.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부과 사유

1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 동 법인 **품질관리실**은 **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

2 **6년간**('10~'15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同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하여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고,**

○ **감사 품질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감사가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었음

❶ 외감법상 업무정지 요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에 업무정지를 건의

❷ 회계부정 가담 정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미친 영향,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에 적합한 시스템 보유 정도, 위반의 중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 **업무정지 기간과 대상은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하되, 회사의 범위를 ❶ 주권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코넥스), **❷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❸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결정**

Ⅲ. 업무정지 조치와 관련한 기업애로 해소 대책

◇ 안진 제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운영중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2.13일 Kick-off 이후 총 6회 회의 개최)

1.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중인 회사의 안진 감사 가능 여부

□ **(안진 감사 3년차 상장회사 · 금산법상 금융기관)** 2017 회계연도 감사업무를 안진이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감사인 변경 필요**

○ **업무정지 개시일 이전**에 17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안진과 既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감사인을 교체해야 함**

□ **(안진 감사 1~2년차 상장회사)** 동 회사들은 안진과의 감사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안진이 계속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감사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한 바,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3월말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교체 가능

※ 관련 규정

(외감법 제4조의2) ② ...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외감규정 제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감리결과 감사인이 업무정지**... 감사인 지정제외를 받거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또한, 감사 1~2년차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금년에 신규감사를 체결**(3년단위)한 경우 이는 신규감사 업무 수행대상으로 보아 **감사인 교체 필요**

2. 법정기한 내 감사인 선임을 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안

◇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 다만, **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을 추진**했으나, 이번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선임기한이 부족**할 수 있음

* 기한내 선임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제재

□ **(감사인 선임기한 관련 특례)** 이번 안진 제재로 인해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실상 연장 운영** 및 **실무지원**

❶ **(선임기한 사실상 연장)** 기한내(~4.30일) **감사계약 미체결**에 따른 법정 **지정기준일**(6.1일) 전까지만 감사인을 선임한다면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함 (**감사인 선임기한이 4.30→5.31일로 사실상 1개월 연장되는 효과 발생**)

❷ **(기한내 미선임 회사 지원)**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공회**에서 **비교적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강제 지정은 아님)토록 하고,

- 한편, 연장기한 내(~5.31일)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있어 **정상참작 예정**

⇒ 감사인 선임과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 제출은 원칙적으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안진 업무정지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연장 허용**

2080360 / 2017-03-24 15:5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3.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어려움 해소방안

◇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분·반기 종료후 45일 내에 분·반기보고서**를 **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기한내 미제출시 과징금, 형사처벌,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이번 **안진회계법인 제재**로 인한 **감사인 변경** 등의 사유로 **감사·검토보고서의 작성이 늦어져 제출이 지연**될 가능성

□ **(제출기한 연장 허용) '16년 안진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례사항**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제출기한 연장 허용**

※ **안진과 계약후 해지를 통해 감사인을 재선임한 회사에 한해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 제출을 최소 1개월 이상 연장**

❶ **(행정제재 면제)** 이번 제재로 인해 금감원에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시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는 바, **과징금** 및 **검찰고발 조치를 면제**

❷ **(시장조치 면제)**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감사(검토)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가 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인한 경우 **거래소 시장조치를 최소 1개월 유예**(3월중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예정)

❸ **(금감원 사전협의)** 회사는 감사인인 안진의 제재로 인해 감사보고서 등이 적시에 확보되지 않아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금감원과 사전협의**

4.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감사시장 모니터링 및 기업애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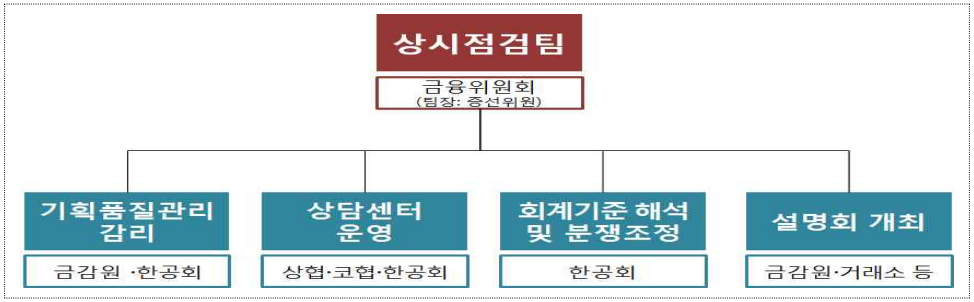

▣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콘트롤타워**로 하여 **안진 감사대상 기업의 애로 등을 모니터링**하고, **밀착형·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

❶ **(품질관리 감리)** 안진회계법인 **정상운영** 및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금감원**에서 동 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즉각 착수
→ 현장 **모니터링** 강화

❷ **(상담창구 마련)** 안진 고객사들이 감사인 변경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각 협회 내 상담센터** 운영(→ 참고2)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상협 / 코스닥 상장법인 → 코협 / 코넥스 상장법인·비상장회사 → 한공회

❸ **(분쟁조정위원회)** 회사-감사인간 **직무상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한공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유도**

※ 아울러, 전기-당기 감사인간 감사의견상 이견 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원 중재기구** 설치 추진

❹ **(설명회 개최)** 안진 제재 이후 **시장안정화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설명**할 수 있도록 필요시 **회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4.6일(목) 15:00~16:00 / 금감원 대강당
► 발표자 :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 주요 내용 : 안진 제재 이후 시장안정화 대책

<용어 설명>

□ 손해배상공동기금 : 감사인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기금

□ 감사인선임위원회 : 감사, 사외이사, 주주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 선임 사전 승인기구로서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 선임시 동 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시 감사위원회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 승인 필요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2080360 / 2017-03-24 15:5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참고1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 건의 범위

□ 이번 업무정지에 따라 **신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는 회사**는

❶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제외**

❷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 따른 **중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17년도 중에는 증선위에서 **안진에 대해 지정대상 회사를 배정하지 않음**)

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안진회계법인은 **2017 회계연도중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임

○ 즉,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2016회계연도** 및 **2018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는 **수행가능**

□ 회계법인 업무정지 대상은 **신규 감사업무***이고,
세무대리·경영컨설팅 등의 기타 업무는 **수행 가능**

* 분·반기 검토 및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업무 일체가 포함

2080360 / 2017-03-24 15:5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참고2 상담센터 운영 방안

◇ **안진 제재조치**로 **야기**되는 **회사**의 **회계감사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회별*** **상담센터**를 설치·운영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상협 / 코스닥 상장법인 → 코협 / 코넥스 상장법인·비상장회사 → 한공회

□ **(목적)** 금번 **안진회계법인 제재조치**로 야기되는 **감사관련 기업 애로해소**

□ **(대상)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17년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추진 중이던 회사 포함)

□ **(상담사항)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된 **외부감사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갈등** 및 **애로사항**

○ **감사계약 체결 지연** 등 감사관련 **회사**의 **애로사항** 및 의문점 등에 대한 **상담업무** 수행

□ **(운영절차) 안진관련 회사**의 애로사항 접수 후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

❶ 상담 **신고서류 작성·제출** :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출**
❷ 상담 **신고 접수·검토** : 접수 내용 **검토** 후 **사안의 성격 판단**
❸ 이첩 및 조치 : 판단에 따라 **직접 처리** 또는 **감독당국, 해당 협회 등 이첩**

□ **(위치)** 각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상장회사협의회(02-2087-7000, www.klca.or.kr) : (상담컨설팅) →
(상담센터 또는 메인화면 Quick Menu 중 상담센터)
► 코스닥협회(02-368-4500, www.kosdaqca.or.kr) : (알림정보) → (공지사항) →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 관련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 안내)
► 한국공인회계사회(02-3149-0100, www.kicpa.or.kr) : (회사 및 감사인 상담센터)

참고3 **제도개선 추진현황***

* 외감법 정부개정안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1.20일)

1.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 **(제기된 문제점)** 1차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차원**에서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필요한 **내부통제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

1 **(내부감사 기능 강화)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내부 감사'**로 **이관**하고, **감사보수·시간, 투입인력** 등도 **'내부 감사'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

2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 상향**

3 **(내부고발 활성화) 고발 포상금 상향** 및 **고발자 보호 강화**를 통해 회사가 **의도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4 **(이사 부정행위 통제 강화) 감사인**이 **이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

2.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 **(제기된 문제점)**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보다는 **영업에 치중**하여 **회사의 분식을 묵인·동조**하고 **회계법인내 품질관리 시스템**이 장기간에 걸친 부실감사를 **적발·통제하지 못함**

1 **(감사인 독립성 제고)** 감사인이 영업 보다는 감사품질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 확대** 및 **비감사용역 제한 강화**

❶ **(지정 확대)** 감사인 **직권지정 확대*** 및 **선택지정제 도입**** 등을 통해 **감사인 독립성** 제고

*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에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의 지정사유 추가 추진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 지정

❷ **(비감사용역 제한 강화)**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수임으로 감사 독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대상 및 범위**' 확대

*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등을 금지대상 업무에 추가하고, 제한대상을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

2 **(품질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❶ **(감사인 등록제 도입)** 적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명실공히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회사** 감사

❷ **(감사품질 법적근거 마련)** 회계법인 **감사품질 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실태 등이 **미흡**한 경우 **증선위 개선권고** 및 **미이행사실 공개**

❸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감사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토록 함

3. 회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성 강화

► **(제기된 문제점)** 분식회계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회사에 비해 회계법인 **업무정지는 과도하다는 회계업계의 주장**이 있는 가운데, 업무정지 조치 외에는 **회사와 감사인의 제재가 비교적 약해 처벌 실효성 부족**

1 **(회사 제재 강화)** 임원 **직무정지**를 신설, **해임권고와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직무정지 연장** 및 **감사인 지정·감리** 등 부과

○ 아울러, 분식회계가 내부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내부감사**(감사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2 **(회계부정 제재 강화)** 회계부정은 예외없이 **일벌백계**된다는 **경각심 부여**

❶ **(과징금 상향)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

* 회사 : 분식금액의 20% / 감사인 : 감사보수 2배→5배

❷ **(형벌 강화) 징역기간**을 5~7년→**10년 이하**, **벌금도** 5~7천만원→**부당이득의 1~3배**로 상향하는 가운데, **징역·벌금**의 **필요적 병과** 추진

2080360 / 2017-03-24 15:5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붙 임)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임시 제1차・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2.23., 2017.3.24. 의결)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감사인】** ① 매출·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10.12말: 697,824백만원, '11.12말: 238,771백만원, '12.12말: 753,054백만원, '13.12말: 1,771,500백만원, '14.12말: 2,919,646백만원, '15.12말: 485,696백만원) - 실행예산(회계추정치) 및 지연배상금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실행예산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매우 부실하게 수행하였으며, -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 과거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 검토 및 회사 재무제표 재작성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 등을 부실하게 하였음 - 특히, '13년 및 '14년 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실행예산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 회사가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②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12.12말: 75,940백만원, '13.12말: 476,648백만원, '14.12말: 506,033백만원, '15.12말: 123,082백만원) - TMT 등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선사들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설정액이 아님을 알고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하거나, -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시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 회사가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를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안진회계법인 :** - 업무정지건의' 12월 - 과징금 1,600백만원 - 과태료 2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법인,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감사업무 제한 **공인회계사 : 4인** - 등록취소건의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공인회계사 : 1인** - 직무정지건의 2년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13.12말: 9,818백만원, '14.12말: 322,118백만원, '15.12말: 287,060백만원) - 손상사유가 발생 Pangea, DeWind 등의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부서 직원의 설명에만 주로 의존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시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 ④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5.12말: 243,475백만원) - 기납부법인세 환급가능성 및 이월결손금 공제율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 평가손실을 인식한 재고자산의 실행예산 반영부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 회사의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⑤ 지연배상금 주석공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12말: 93,828백만원) -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공기지연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 회사가 지연배상금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공시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공인회계사 : 1인** - 직무정지건의 1년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공인회계사 : 2인** - 직무정지건의 6월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 등록취소·직무정지 건의 조치에 대해서는 2017.3.8. 제4차 금융위원회 의결로 기확정 **공인회계사 : 1인**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공인회계사 : 1인**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공인회계사 : 1인**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2080360 / 2017-03-24 15:5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대우조선해양㈜	⑥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 외감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또는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회사와 관련된 회계자문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⑦ 거짓 자료 제출 - 금융감독원의 감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와 다른 내용을 부당하게 편철하여 위·변조한 감사조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공인회계사 : 1인**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검찰수사가 종료된 것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 8인에 대한 검찰고발·통보는 생략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업무정지 건의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법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2080360 / 2017-03-24 15:5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